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외국인 기본인적정보”의 정의를 규정하고,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내용의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('25. 6. 21. 시행 예정)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2에 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14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) ① 법 제78조의2에 따라

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제67조의15(정보시스템의 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에 따른

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78조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의 수집·보유·관리
2. 법 제7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생성·제공·관리
3. 법 제78조의3제1항 따른 송수신 연계 정보의 현황, 시스템 로그기록

자료 관리

별지 제126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요청 구분	[] 신규 [] 변경 (사유:)			
요청 기관	요청기관명			
	담당부서명		전화번호	
	담당자 성명		전자우편	
업무 개요	시스템명			
	사용업무			
	사용기관			
	사용인원			
근거 법령				
연계 정보	서버명			
	서버IP	(Port 번호 포함)		
	연계방식			
	이용방식			
사용 일시	년	월	일	

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7조의14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명) 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7조의14(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) ①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.</u> <u>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67조의15(정보시스템의 운영)</u> <u>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</u>

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78조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의 수집·보유·관리

2. 법 제7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생성·제공·관리

3. 법 제78조의3제1항 따른 송수신 연계 정보의 현황, 시스템 로그기록자료 관리